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2106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2106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나200411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디에스디삼호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한국전력공사

판결 선고 2015. 4. 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7. 25. 선고 2013나20041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이유

1.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정한 '부담금'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관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은 고객의 새로운 전기 사용 또는 계약전력의 증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금전지급의무로서의 '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준시설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이유모순, 법률유보의 원칙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정한 부담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약관의 해석과 효력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하여는, 그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그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16.자 2007마1328 결정,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48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약관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은 배전선로에 관한 공사 발생 여부 및 공사내역과 관계없이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계약전력에 일정한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기본시설부담금과 이 사건 약관 제94조에 따라 산정한 거리에 일정한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거리시설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것이고, 실제 공사의 발생 여부나 공사비 부담 등에 관한 사정은 표준시설부담금 중 거리시설부담금의 산정에 영향을 미칠 뿐이므로, 원고나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 사건 사업구역의 전기공급선로에 대한 공사비용 및 배전선로

설치비용 등을 모두 부담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사업구역의 전기공급설비에 관하여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사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시설부담금만으로 산정된 표준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① 전기공급계약은 피고와 같은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전기수요자 사이의 사법상 계약관계이나, 전기라는 상품이 갖는 공공재로서의 성격 및 국민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공법상 규제를 가하고 있는 점, ② 그러한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약관은 일반 전기수요자들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일반공급설비를 원칙적으로 피고가 설치하되, 개별 전기수요자에게는 공사 여부나 공사 내역과 무관하게 산정된 표준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전기는 막대한 자원과 비용을 들여 건설된 발전설비에 의한 생산량을 한도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자원으로서, 증가하는 전기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발전 및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점, ④ 이러한 설비의 증설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기수요자가 전기사용신청을 하면서 새로 설치되는 설비의 실제 공사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지에 따라 전기수요자들 사이에 비용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 사건 약관은 그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전기수요자에게 실제 소요 비용이 아니라 계약전력 및 공사거리에 따라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새로 전기를 공급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피고가 전기공급설비 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아닌 제3자가 공사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전기수요자에게는 신규 전기 공급 또는 계약전력 증가라는 이익이 있는 반면 피고에게는 기존 설비의 증설·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신규 전기 공급 또는 계약전력 증가로 인한 유·무형의 비용지출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수요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표준시설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점, ⑥ 이 사건 약관은 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본시설부담금만으로 표준시설부담금을 산정하도록 하거나 공사가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범위까지는 거리시설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등 전기수요자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표준시설부담금의 액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6호 및 제84조(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제83조'는 오기로 보인다) 제1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무효인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관련 법리, 이 사건 약관 등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관의 해석과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심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